

#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韓炳完\*

- 
- I. 서론
  - II. UETA의 제정목적과 입법경위
  - III. 적용범위
  - IV. UETA의 주요내용
  - V. 결론
- 

## I. 서 론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량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자, 법률입안자 및 대중매체가 “e-business”에 많은 관심과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담은 상거래법(commercial laws)의 존재 필요성이 제기된다.<sup>1)</sup>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법률제정 및 제안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외적으로는 1997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sup>2)</sup>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관한 세계적인 협정을 체결할 것과 인터넷을 정부의 규제 없이 시장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지대를 선언하였다.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1999년 미 상무부 보고서 「디지털경제혁명 II」 (The Emerging Digital Eco-

---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1) Jane Kaufman Winn; Michael Rhoades Pullen, Despatches from the front: recent skirmishes along the frontiers of electronic contracting law. (Survey of Law of Cyberspace) 1999, ABA, p.1.

2) The White House,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7.7.1. p.1. <http://www.ecommerce.gov/fraemwrk.htm> 참조.

nomy II)에 의하면 “인터넷 또는 웹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업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sup>3)</sup> 미 상무부 통계청에 의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권 또는 권리의 이전을 포함하는 컴퓨터를 매체로 한 네트워크 상에서 완료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sup>4)</sup> 한편 전자상거래의 실질적인 모습에 대하여 Framework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에서 전 세계의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로부터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거실에 앉아서 이러한 상품을 그들의 컴퓨터나 TV를 통해 보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택한 제품을 주문하며,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미통일주법위원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 NCCUSL)<sup>5)</sup>에서 전자거래에 관한 州法(State Law)의 모델법인 1999년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UETA)<sup>6)</sup>과 2000년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UCITA)<sup>7)</sup>의 최종안을 승인하였으며, 연방법으로는 2000년 「전자서명법」(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S. 761 : E-SIGN)<sup>8)</sup>이 법률로 제정되었다.<sup>9)</sup>

- 
- 3) “electronic commerce (i.e., business processes which shift transactions to the Internet or some other non-proprietary, Web-based system)”;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 1999.6.22. p.1. <http://www.ecommerce.gov/ede/report.html> 참조.
  - 4) U.S. Census Bureau, “Measuring Electronic Business: Definitions, Underlying Concepts, and Measurement Plans”, 1998. (<http://www.census.gov/epcd/www/ebusines.htm> 참조.)
  - 5) 109년의 역사를 지닌 NCCUSL는 각 州에서 임명된 300여명 이상의 변호사, 판사 및 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州에 적용될 통일법 및 모델법을 제시하고, 州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이다. 그 동안 UCC 등을 비롯한 다수의 입법을 제정하였다. <http://www.nccusl.org/> 참조.
  - 6) UETA 최종안(Dec. 13, 1999 Draft)의 조문 및 관련 정보는 <http://www.uetaonline.com> 참조.
  - 7) UCITA 최종안(July28-August4, 2000)의 조문 및 관련정보는 <http://www.ucita-online.com/ucita.html> 참조.
  - 8) 전자서명법의 공식 명칭은 “국제·내 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S. 761: E-SIGN)이다. E-SIGN은 기록과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과하거나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을 기록 및 서명과 법적 효력 측면에서 등가성(equivalence)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SIGN은 2000년 6월 16일 의회에서 채택되고, 동년 6월 30일 대통령이 서명함. 「SEC. 202. 발효일」에 따라 2000년 10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E-SIGN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법명, 제 I 편 상거래에 있어서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 제101조 유효성에 관한 총칙, 제102조 연방법 우선 원칙의 예외, 제103조 구체적 예외, 제104조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의 적용, 제105조 연구, 제106조 용어정의, 제107조 발효일, 제II 편 양도가능기록, 제201조 양

UETA는 1999년 2월 제정된 우리의 전자거래기본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특히 전송중 전자문서의 변조와 오류, 전자공증 및 양도가능기록 등에 있어서는 우리법에 비해 앞서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UETA의 입법경위, 적용범위 및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그간의 국내외 논문<sup>10)</sup> 및 Comment를 주로 참고하였다.

## II. UETA의 제정목적과 입법경위

### 1. UETA의 제정목적

UETA가 추구하는 핵심목적은 i) 상거래영역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고, ii) 전자기록<sup>11)</sup>과 전자서명<sup>12)</sup>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장애를 제거하는데 있다.<sup>13)</sup>

---

도가능기록, 제202조 발효일, 제III편 국제전자상거래의 촉진, 제301조 국제거래에서의 전자서명의 사용을 규율하는 원칙, 제IV편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 제401조 증여를 받을 권한. <http://thomas.loc.gov/cgi-bin/query/C?c106:/temp/~c106D3cdcn.:http://lawyers.about.com/careers/lawyers/library/weekly/aa061900a.htm?terms=e-sign> 참조.

9) UETA와 다른 입법(UCITA, E-SIGN 및 기타 연방법)과의 관계는 지면 관계상 추후 논하고자 한다.

10) 국내문헌으로는 오병철, 통일전자거래법에 관한 고찰-1999년 3월 19일자 초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제8집), 1999.; 손태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 최종안의 내용과 의의, 인터넷법률 3호(2000.11), 법무부; 윤주희, 전자거래의 입법동향과 우리의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워크샵 2000-4), 2000. 10.; 정경영,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00).; 최준선,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분석,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연구자료2001-5) 등이 있으며, 외국문헌으로는 Jane Kaufman Winn; Michael Rhoades Pullen, Despatches from the front: recent skirmishes along the frontiers of electronic contracting law. (Survey of Law of Cyberspace) 1999, ABA.; Patricia Brumfield Fry, A Preliminary Analysis of Federal and State Electronic Commerce Laws, <http://www.nccusl.org/whatsnew-article1.htm>; R. David Whitaker, Rules under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for an electronic equivalent to a negotiable promissory note, (Survey of the Law of Cyberspace), 1999, ABA 등이 있다.

11) UETA 제2조 제7항에서 “전자기록”이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송신, 교환, 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을 말한다.

12) UETA 제2조 제8항에서 “전자서명”이라 함은 어떠한 기록에 첨부되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음향, 기호 또는 프로세스(process)로서 기록에 서명할 의사를 가진 자에 의해 실시 또는 채택되는 것을 말한다.

13) 본 법의 목적에 관하여 UETA 제6조 Comment No 1.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a)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상거래와 정부거래 장려,

UETA는 탄력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안된 법안이며, 이는 전자상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자하는 본 법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도 본 법을 적용할 수 있다.<sup>14)</sup>

## 2. UETA의 입법경위

UETA의 입법경위를 간략히 보면<sup>15)</sup> 최초의 모델규정(model provisions)은 April 10, 1997 초안으로 「Drafting Committee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tractual Transactions」에서 작업하였으며, 법명은 「The Uniform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tractual Transactions Act」이며, 구성은 5개 장과 총 30개 조문으로 되었다.<sup>16)</sup> 그 후 August 15, 1997(draft 2.897) 초안부터

---

활성화하고자 함, (b) 서면요건이나 서면요건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및 정부거래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자 함, (c) 전자적수단(방식)의 사용을 통하여 상거래나 정부거래에 적용되는 제반법률을 단순, 명료, 현대화하고자 함, (d) 당사자간의 합의나 거래관행을 통하여 상거래 또는 정부거래에 있어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수행의 관습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 (e) 상거래나 정부거래의 수행에 있어 전자 및 기타 기술의 사용에 관한 법을 각 주들 간에(나아가 전세계적으로) 통일하고자 함, (f) 전자상거래 및 전자적 정부거래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g) 전자상거래와 전자적 정부거래를 실현함에 요구되는 법적, 경영적 기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14) UETA 제6조 Comment No 2.에서 본 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전자거래를 촉진함에 있어 다른 해당 법률과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함, (b) 전자거래와 관련한 합리적인 관행 및 그러한 관행의 지속적인 확장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함, (c) 본 법을 수용하는 각 주들 간에 본 법의 일반적 목적인 법률의 통일을 도모한다."
- 15) 그 동안 본 법의 입법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Dec. 13, 1999 Draft/Draft Approved at Annual Conference July 23-30, 1999/1999 Annual Meeting Draft/March 19, 1999 Draft/March 24, 1999 Memo RE: April UETA Meeting/March 19, 1999 Memo from Ben Beard RE: General Comments and Issues January 29, 1999 Draft/January 29, 1999 Memorandum/September 18, 1998 Draft September 18, 1998 Memorandum/1998 Annual Meeting Draft/March 23, 1998 For April 17-19, 1998 Meeting/November 25, 1997 Memorandum/November 25, 1997 Draft/August 15, 1997 Memorandum/August 15, 1997 Draft/Reporter's Memorandum/April 10, 1997 Draft : [http://www.law.upenn.edu/bll/ulc/ulc\\_frame.htm](http://www.law.upenn.edu/bll/ulc/ulc_frame.htm) 참조.
- 16) 1997년 4월 10일 D. Benjamin Beard, Reporter's Memorandum Preliminary Issues에 의하면 UETA 초안 작업시 sources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the "Uncitral Model"); 2. The Illinois Electronic Writings and Signature Act, November 4, 1996 Draft (the "Illinois Model"); 3. The Oklahoma Bankers Association Technology Committee, Digital Writing and Signature Statute, Second Discussion Draft, June 17, 1996 (the "Oklahoma Model"); 4.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2B - Licenses, January 20, 1997 Draft ("Article 2B Draft"); 5.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fficial Text-1995

는 NCCUSL가 초안 작업을 하였으며, 법명은 「Electronic Transactions Act」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November 25, 1997 초안부터는 법명을 현재의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로 변경되었으며, 구성은 6개 장과 총 33개 조문으로 되었으며, 그 후 March 23, 1998(For April 17-19, 1998 Meeting) 초안에서는 6개 장 총 30개 조문으로 되었다. 그 후 July 24-31, 1998 초안에서는 6개 장 총 32개 조문으로 되었으며. 그 후 September 18, 1998 초안에서는 6개 장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January 29, 1999 초안에서는 3개 장 총 24 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March 19, 1999 초안에서는 3개 장 총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July 23-30, 1999 초안에서는 3개 장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최종안에서는 자구가 수정되어 장별 구별 없이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sup>17)</sup>

UETA는 지금까지 33개 주에서 채택하였으며, 현재 14개 주의회에 법안 계류중이다.<sup>18)</sup>

### III. 적용범위

UETA 제3조에 의하면 본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a) 본 조 (b)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본 법은 ‘거래’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에 적용된다.
- (b) 본 법은 어떤 거래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도 내에서는 그 거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the “UCC”).

- 17) UETA 최종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법명,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불소급 적용, 제5조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의 사용; 합의에 의한 변경, 제6조 해석 및 적용, 제7조 전자기록,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의 법적 승인, 제8조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기록의 제공, 제9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과 효과, 제10조 변조 및 오류의 효과, 제11조 공증과 인증, 제12조 전자기록의 보존; 원본성, 제13조 증거로서의 허용성, 제14조 자동화된 거래, 제15조 송·수신 시기와 장소, 제16조 양도가능기록, 제17조 전자기록과 정부기관에 의한 서면기록의 전환의 생성과 보존, 제18조 정부기관에 의한 전자기록의 승낙과 분배, 제19조 상호이용 가능성, 제20조 각 조항의 독립성, 제21조 발효일.
- 18) [http://www.nccusl.org/nccusl/uniformact\\_factsheets/uniformacts-fs-uela.asp](http://www.nccusl.org/nccusl/uniformact_factsheets/uniformacts-fs-uela.asp) 참조.; 미국의 많은 주에서 UETA를 채택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http://www.nccusl.org/nccusl/uniformact\\_why/uniformacts-why-uela.asp](http://www.nccusl.org/nccusl/uniformact_why/uniformacts-why-uela.asp) 참조.

- (1) 유언, 유언보충서 또는 유언에 의한 신탁의 성립과 집행을 규율하는 법
  - (2) 통일상법전(UCC), 다만 제1-107조<sup>19)</sup> 및 제1-206조<sup>20)</sup>, 제2편(sales) 및 제2A편(leases)을 제외한다.
  - (3)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sup>21)</sup>; 및
  - (4) 「각 주에서 정하는 기타 다른 법률」.
- (c) 본 조 (b)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전자기록 또는 전자서명이라 하더라도 동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이 본 조 (b)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법률이 아닌 법의 적용을 받는 한도 내에서는 본 법이 적용된다.
- (d) 본 법이 적용되는 거래는 또한 다른 적용가능한 실체법에 적용된다.”

Comment를 중심으로 각 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항은 제2조 제16항 “거래”(transaction)의 정의에서 “영업행위, 상거래상의 또는 정부의 업무와 관련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본 법에서 영업, 상거래 및 정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거래가 아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방적으로 생성된 거래의 일부가 아닌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에도 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법은 정보나 기록, 서명이 제공 또는 보존되는 매체에 영향을 주는 법으로서 본 법의 규정들은 다른 법률 하에서 요구되는 서면·서명요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22)</sup> 따라서, 본 조

19) UCC § 1-107. Waiver or Renunciation of Claim or Right After Breach.

20) UCC § 1-206. Statute of Frauds for Kinds of Personal Property Not Otherwise Covered.

21) UCITA는 새로운 전자상거래上 계약의 형성, 해석, 이행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정보의 사용허락(Licenses)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법은 컴퓨터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제품,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및 온라인 정보의 거래를 포괄하는 컴퓨터정보거래법이다. Jane K. Winn, *supra note p.5.* 주 70-71.: UCITA는 모두 9개의 장(Part), 10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서 동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적용범위, 준거법, 법정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을 규정한다. 제2장에서는 “계약의 성립”으로서 전자거래에 의한 경우를 상정한 계약성립을, 그리고 제3장에서는 “계약의 해석”, 제4장에서는 “담보”(warranty), 제5장에서는 “권리의 이전”, 제6장에서는 “계약의 이행”, 제7장에서는 “계약위반”, 제8장에서는 “구제방법”, 제9장에서는 기타 규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현재(2001.7) Virginia 州와 Maryland 州가 UCITA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 州 및 채택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州로는 Arizona, District of Columbia, Illinois, Maine, New Hampshire, New Jersey, Oregon, Texas 등이다.; <http://www.nccusl.org/nccusl/pubndrafts.asp>. 참조.

22) 본 항은 정보나 기록, 서명을 제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이를 전자적 매체를 이용 하더라도 기존의 법률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b)항 소정의 적용배제는 특정한 서면·서명요건을 부과하는 법규로서 동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항에 명시된 법 이외의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해서는 본 법이 적용된다. 본 항 (1)호에서 유언, 유언보충서 또는 유언에 의한 선택을 적용 제외한 것은 동 기록들은 본 법에서 정의하는 거래에는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며, 다만 UCC 제1-107조 및 제1-206조, 제2편 및 제2A편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는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2편 및 제2A편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해 본 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매매나 리스거래에 있어서는, 수표에 의한 금전지급이나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직접 관련되는 거래구조를 취하지 않으며, 또 매매나 리스는 보통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UCC 제3편(negotiable instruments), 제4편(bank deposits and collections), 제4A편(funds transfers)이 제외된 것은 동 규정들은 대금지급과 관련되고, 그리하여 기본계약의 계약당사자 외에도 많은 당사자들이 관계되는 바, 전자적 매체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 결과(impact)를 다 고려하는 작업은 동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적용배제 하였다. 또한 제5편(letters of credit), 제8편(investment securities) 및 제9편(secured transactions; sales of accounts and chattel paper)이 제외된 것은 각 편의 규정들은 개정시에 이미 전자거래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안하였기 때문이다.<sup>23)</sup>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은 둘 이상의 법률요건을 만족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둘 이상의 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c)항은 전자기록·전자서명이 본 조 (b)항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법상의 요건을 만족할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동 전자기록·전자서명이 이를 법하에서 사용될 수 있고 또 유효함을 밝힌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수표보존 관련법과 관련하여서는 수표라는 전자기록이 인정되고, 이러한 전자기록은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sup>25)</sup> 또한

23) UETA 제16조(양도가능기록)에 의하여 본 법이 양도가능기록에 적용되더라도 동 조가 대금지급제도 자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동 조는 오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적용된다. 본 법이 UCC 제3편 및 제4편을 적용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 법이 양도가능기록에 적용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4) 예를 들어, UCC 제4편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서 수표라는 전자기록이 사용된 경우 동 전자기록에는 UE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UETA는 전자수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본 조 (c)항은 (b)항에 의하여 일견 배제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본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6)</sup>

(b)항 (4)호의 적용제외는 제2조 제16항 소정의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적용되는 법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사용된 기록, 영업, 상거래 또는 정부의 업무와 무관한 기록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기록에 관한 법을 배제한다는 것은 다른 기록이나 서명은 본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도치 않은 추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b)항 (4)호에는 州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법을 추가로 삽입하여, 어떤 기록이 (c)항 하에서 유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IV. UETA의 주요내용

### 1. UETA의 기본원칙

본 법 제7조는<sup>27)</sup> 기존 실체법상의 기록, 서명 및 계약의 효력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전제사항을 다루고 있다.<sup>28)</sup>

Restatement 2d Contracts, 제8조에 의해, 계약은 유효하나 강제력이 부인될 수 있다.<sup>29)</sup> 강제력이 부인되더라도(unenforceable) 기록은 부수적 효력을 여전히 가진다.<sup>30)</sup> 물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인도의무의 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sup>31)</sup> 물론, 전자기록이 다른 법률 하에서 기록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본

25) 후술하는 UETA 제12조(전자기록의 보존) 참조.

26) 예를 들어,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거래에는 UCC 제9편이 적용되지만, 동 편은 토지소유자의 유치권(landlord's lien)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 편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해서는 UETA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유치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UETA가 적용된다.

27) "(a) 기록이나 서명은 이것이 전자적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b) 계약은 그 성립에 있어 전자기록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c) 법에서 서면에 의한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은 그 법을 만족시킨다. (d) 법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은 그 법을 만족시킨다."

28)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제공의 방식'의 요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29) 예를 들면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

30) 예를 들면 부보된 물품이라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동 물품의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법의 규정사항이 아니다. 즉 이는 해당 실체법에 따라 판단된다.<sup>32)</sup>

제(c)항 및 (d)항은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각각 기록과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직접규정으로서, 등가성을 부여하고 있다.<sup>33)</sup>

UETA 제13조에서는 “소송절차에서, 기록이나 서명이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sup>34)</sup>라고 정의하여 제7조와 마찬가지로, 본 조에서는 제공되는 정보를 담은 매체를 문제삼아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가 전자기록으로의 인정을 위한 기타 요건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sup>35)</sup> 다만, 본 법 제5조<sup>36)</sup>에 의하면, 본 법이 전자적으로 행위하기로 “합의”<sup>37)</sup>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를 넓게 해석하여 본 법이 가능한 한 널리 적용되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본 법의 목적을 살려야 할 것이다. 본 법 제5조 (a)항에서는 본 법이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b)항에서는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인정하는 바, 합의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항에서

31) Restatement 2d Contracts, Section 8, Illustration 4. 참조.

32) UETA 제8조 참조.

33) 그 예는 UETA 제7조 Comment No. 3. 참조. 또한 등가성이 인정되기 위한 추가적 요건 및 전자기록의 행위자 귀속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및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과 효과 참조.

34) Sourc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rticles 9.

35) Uniform Rules of Evidence 1001(3), 1002, 1003 and 1004. 참조.

36) “(a) 본 법은 기록 또는 서명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송신, 통신, 수신, 저장되거나 기타 처리 또는 사용될 것은 요구하지 아니한다. (b) 본 법은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당사자간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당사자가 거래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는지는 당사자의 행위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c) 어느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거래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다른 거래의 수행에 있어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이행할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합의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 (d) 본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법 규정의 효력은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본 법의 어떤 조항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본 법의 다른 규정이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이 가지는 법률효과는 본 법 또는 기타 적용되는 법에 의해 결정된다.”

37) UETA 제2조 제(1)항에서 “‘합의’라 함은 당사자들의 실제의 거래교섭을 말하며, 이는 당사자들의 言文에서 발견되거나 기타 다른 상황으로부터 또는 특정한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하에서 합의로서 효력을 주는 규칙, 규정 또는 절차로부터 추론된다.”

합의의 존재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sup>38)</sup>

(c) 항은 과거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하였더라도, 추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의 수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의 판단은 상기 합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수행의 합의 또는 거절은 그 단위가 “거래”이다. 어떤 거래에 대해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수행을 합의하였다면, 그 거래의 수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에<sup>39)</sup> 대해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별개의 “거래”에 대해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수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과 전자적으로 행해진 해당 행위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e) 항은 본 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가장 핵심적인 규정으로서 전자기록, 전자서명이 기록, 서명으로서 가지는 실체법적 효력을 기준 법에 따름을 밝힌 것이다.<sup>40)</sup> 사용된 매체상의 어떤 기록이나 서명 또는 계약서의 유효성 문제와는 별개이다.<sup>41)</sup> 법에서 기록이 담아야 할 최소한의 실체적 내용을 정하는 경우, 그 기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그 기록이 해당 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sup>42)</sup>

## 2.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기록의 제공

본 법 제8조는<sup>43)</sup> 보충규정(savings provision)으로서, “본 법으로 인해 다른

38) Restatement 2d Contracts, § 2. Promise; Promisor; Promisee; Beneficiary; § 3. Agreement Defined; Bargain Defined; § 19. Conduct as Manifestation of Assent 참조.;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는 예와 합의의 존재가 부정되는 예에 관하여는 UETA 제5조 Comment No. 4 참조.

39) 예를 들어, 통지의 발송, 수령.

40) UETA 제11조(공증과 인증) 참조. 이에 대한 예외로는 제16조(양도가능기록) 참조.

41) 예를 들어, 제7조 (a)항과 (b)항은 당해 기록이나 서명 또는 계약서가 유효함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42) 후술하는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즉,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기준 법상의 요건은 본 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함을 밝히고 있다.

43) “(a)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를 수행하기로 동의하였고 또 법이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 전송 또는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정보가 수신 당시 수신자에 의한 보유가 가능한 전자기록으로 제공, 전송 또는 전달되었다면 그 요건은 충족된다. 송신자 또는 송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수신자로 하여금 전자기록을 인쇄 또는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정보는 수신자에 의한 보유가 가능하지 아니하다. (b)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기록을 i) 특정한 방식으로 고지 또는 현시

실체법의 효력이 감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본 법의 근본전제를 보장, 지원하는 조항이다. 제7조가 서면요건을 다름에 비해, 본 조는 ‘서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제공의 방식’의 요건을 다루고 있다.

Comment에 의하면 (a)항은 “전자기록의 보유가능성” 요건으로 다른 법에서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전자기록이 이러한 서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의 수신자가 그 전자기록을 받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보관하였다가 추후 다시 그 전자기록을 꺼내 볼 수 있어야 한다. 송신자(송신자의 시스템 포함)가 수신자로 하여금 전자기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다면, 본 조에 저촉된다.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시스템에 사용된 기술이 상이하여 전자기록(정보)의 보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 조의 충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b)항은 보충규정으로서, 정보제공의 방식을 규정하는 다른 법의 요건은 동 법으로 인해 그 효력이 감퇴되지 않음을 규정한 것이다.<sup>44)</sup>

(c)항은 송신자로 하여금 정보의 보유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유인하는 규정이다. 정보보유의 금지가 필요한 상황(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의 보호, 기밀의 유지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보유를 금지하도록 함이 당연하나, 이때에도, 그 정보를 강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유금지가 가해지지 않아야 한다.

(d)항은 원칙적으로 본 조 보호규정(protective purpose)이 강행규정임을 밝

되도록 하거나, ii) 특정한 방식으로 송신, 통신 또는 전송되도록 하거나, 또는 iii)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적용된다. (1) 기록은 다른 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현시되어야 한다. (2) 본 조 (d)항 (2)호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기록은 다른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송신, 통신 또는 전송되어야 한다. (3) 기록은 다른 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c) 송신자가 수신자로 하여금 전자기록을 인쇄 또는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전자기록은 수신자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d) 본 조에서 정하는 요건은 합의로써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1) 이 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송신 또는 전달할 것을 요구하지만 합의에 의해 그 요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유가 가능한 방식의 전자기록일 것을 요구하는 본 조 (a)항의 요건은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2) 이 법 이외의 다른 법 하에서 요구되는 「1급 우편, 선불우편」, 「미연방 일반우편」으로 기록이 발송, 통신 또는 전송되어야 할 요건은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44) 예를 들어, 어떤 법이 1급의 미국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한 경우, UETA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은 그대로 유효하고, 따라서 제공될 정보가 CD에 기록되어더라도 이 CD는 1급의 미국우편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또 법에서 특정한 기록을 제공하면서 다른 부수 기록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전자기록의 제공에 있어서도 동 부수 서류들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힌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에서 기록의 송부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그 법에서 보호의 포기를 허용하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포기가 허용된다.

### 3.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과 효과

본 법 제9조는<sup>45)</sup> '비대면거래'(faceless transaction)에서 진정성(authenticity)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Comment에 의하면 (a)항은 사람(X)의 행위의 결과인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은 그 사람(X)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귀속의 효과는 (b)항에서 규정한다. 동 귀속규정은 귀속에 관한 기준의 법리를 그대로 존중한다. 대리인에 의한 행위, "전자대행수단"(Electronic agent)<sup>46)</sup>에 의한 행위도 사람(X)의 행위로 된다. 원래 서명의 이용은 어떤 기록을 사람(서명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인 바, 본 조는 이러한 서명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록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개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귀속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당사자간의 확립된 거래과정(course of dealing)을 보아서도 귀속자를 알 수 있다. 팩스를 이용한 정보전송의 경우, 팩스문의 최상단에는 이를 발신한 팩스기계에 관한 정보가 인쇄되기 때문에 동 팩스문을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있음. 또, 마찬가지로, letterhead<sup>47)</sup>를 보아서도 발송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letterhead는 팩스문의 진정성을 확인할 의도로 발송인이 채용한 심볼(symbol)이기 때문에, 동 letterhead가 서명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다.<sup>48)</sup> 전자적 환경 하에서

45) "(a)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은 그것이 사람의 행위였다면 당해자에게 귀속된다. 사람의 행위는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이 귀속될 사람을 결정하는데 적용된 보안절차의 효능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하여 여하한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b) 본 조 (a)항에 따라 사람에게 귀속된 전자서명이나 전자기록의 효과는, 당사자의 합의나 기타 다른 법에서 정한 바를 포함하여, 그것이 생성, 실행 또는 도입된 당시의 제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46) UETA 제2조 제6항에서 "전자대행수단(Electronic agent)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자연인에 의한 검토(review) 또는 행위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기록이나 전자적 작동에 대해 독립적으로 동작을 개시하거나 반응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자적 또는 기타 자동화된 방식"을 말한다.

47) 편지지 윗부분에 인쇄된 문구(발신인 또는 회사의 주소, 이름).

48) 그러나, 이 경우 서명으로의 인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명으로서의 의사(intention)가 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팩스문의 letterhead가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서명으로서의 의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전자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를 보아 그것이 전자기록을 어느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음이 충분한지 여부를 통해 판단된다.

는, 숫자코드, 개인의 ID(PIN)나 공개키 및 비밀키의 조합을 통해 귀속자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안절차<sup>49)</sup>는 귀속자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클릭을 통한’(click-through) 거래에서도 서명의 의사가 인정되면 전자서명이 있음이 인정된다. 이 때 동 click-through의 출처를 추적함으로써 본 조에 따라 전자기록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b)항은 전자서명과 전자기록의 귀속의 효과를 다루고 있으며,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자가 결정되면, 그 귀속의 효과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포함하여 제반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4. 자동화된 거래<sup>50)</sup>

본 법 제14조는<sup>51)</sup> 거래당사자의 전자대행수단으로 기능하는 기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는 계약체결시에 자연인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부인할 수 없다. 기계가 개입되는 경우, “의사요건”은 동 기계를 프로그램하여 이용한데서 찾을 수 있다.<sup>52)</sup>

Comment에 의하면, 제2항은 “익명”的 클릭을 통한(click-through) 거래를 유효하게 한다. 만약 웹사이트 소유자가 지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동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또 문제의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읽은 후 그 조건에 동의한다는 의미의 “I agree” 버튼을 클릭해야만 하

- 
- 49) UETA 제3조 제14항에서 “보안절차”라 함은 전자서명, 전자기록 또는 전자적 실연이 특정한 사람의 책임을 확인할 목적으로 또는 전자기록에 들어있는 정보의 변경(changes) 또는 오류(errors)를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보안절차는 알고리듬이나 기타 코드, 식별을 위한 문자 또는 숫자, 암호 또는 담신(callback) 또는 기타 인정절차의 사용을 요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 50) “자동화된 거래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자연인의 개입이 없이 단지 기계가 사용되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 또는 수행되는 거래이다.” 이렇게 포괄적 정의방식을 취한 이유는 본 법이 적용되는 거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UETA 제2조 제2항 Comment No.2.참조
- 51) “자동화된 거래에는 다음의 각 항이 적용된다. i ) 자연인이 전자대행수단의 작동 그 자체나 또는 그로 인한 결과인 거래조건 또는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은 양당사자의 전자대행수단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다. ii) 계약은 소유자를 위하여 또는 타인을 위하여 동작하는 일방당사자의 전자대행수단과 자연인의 상호작용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동 상호작용에는 그 상호작용 중에 자연인이 거절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전자대행수단이 거래 또는 이행을 완성하도록 함을 자연인이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iii) 계약조건은 적용가능한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Sourc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rticles 11.
- 52) 본 조 Comment No. 1.

도록 하는 경우, 동의한 자에게는 거절의 기회가 주어졌었고(A was free to refuse) 또 이로 인해 그 자(A)는 그 웹사이트에서 거래가 성사(complete the transaction)됨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그 결과 체결되는 계약조건의 내용은 일반 계약법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I agree"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A는 서명 할 의도로 그 과정을 거친 것이 되고, 그 거래의 기록 즉 법적인 의무에 구속 된다. 또 법에서 "서명된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거래는 강제 가능 하다. 전술한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과 효과에 따라 전자기록을 행위자 (A)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바, 웹사이트에서 특정한 과정을 거쳐야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귀속이 인정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5. 변조(change) 및 오류(error)의<sup>53)</sup> 효과.

본 법 제10조는<sup>54)</sup> 전자대행수단을 통해 행위하고자 하는 자(자연인)로 하여금 오류 있는 기록의 송신을 방지하거나 일반 송신된 오류 있는 기록도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마찬가지로, 전자대행수단으로 하여금 자연인이 보내온 전자기록을 수령한 후 거래를 성사

53) 본 법 제10조 Comment No. 1에서 '변조'와 '오류'를 구분하고 있다. 즉, 매수인이 물품 100개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매도인에게 송신하였으나 매수인의 정보처리시스템이 1,000개로 변조시킨 경우, 매수인이 전송한 것과 매도인이 수신한 것 간에는 본 조 소정의 '변조'가 발생한 것이며, 반면, 매수인이 단지 100개만 주문할 의도였으나, 타이핑을 하면서 1,000개라고 하고, 이러한 실수를 인식하기 못하고서 동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본 조 소정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54) "거래당사자간의 전송 과정에서 전자기록에 변조 및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항이 적용된다. 1) 양당사자가 변조나 오류를 감지하는 보안절차를 사용할 것을 합의하여, 일방은 그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였더라면 그 변조나 오류를 감지할 수 있었다면, 보안절차를 준수한 당사자는 변조 또는 오류 있는 전자기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 자연인이 개입된 자동화된 거래에서, 그 자연인은 그가 타인의 전자대행수단을 다름에 있어 발생시킨 오류로 인하여 생성된 전자기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전자대행수단이 오류에 대한 예방이나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 그 자연인이 오류를 인지했을 당시, 그 자연인은: (A) 그 오류 및 자신은 상대방이 수령할 전자기록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즉시의 문제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임) (B) 상대방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를 것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오류 있는 전자기록으로 인하여 수령한 약인을 상대방에게 반송하거나, 상대방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C)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약인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사용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1)항 또는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변조 또는 오류는 착오의 법리를 포함하여 다른 법이나 당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효력을 가진다. 4) 본 조 제(2)항과 (3)항은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시킴에 앞서 이를 그 자연인이 다시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확인 메시지를 내보내도록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전자대행수단이 오류에 대한 예방이나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조는 당사자간의 전자기록의 전송시나 자동화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변조나 오류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전송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조 또는 오류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

Comment에 의하면, (1)항은 변조 및 오류의 감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보안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자연인, 기계에 의한 변조 또는 오류인지는 불문한다. 양당사자가 보안절차를 준수하였더라도 감지하지 못하였을 변조 및 오류의 문제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 본 항은 보안절차를 통해 변조 및 오류를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어느 일방이 보안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착오에 관한 일반법과 일치하게, 당사자가 착오를 피하기 위한 이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자에게 그 기록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한다.<sup>55)</sup>

(2)항은 상대방의 전자대행수단을 다루는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본 항은 “자연인”에 의한 오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전자대행수단에 의한 오류는 시스템의 오류에 해당하고, 이때에는 (1)항 또는 (3)항이 적용된다. 본 항은 잘못을 범한 자에게 추가적인 요건<sup>56)</sup>을 부과하고 있다. (1)항과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나 기타 법(착오법 포함)이 적용되며, 기록보유(record retention)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제12조(전자기록의 보존; 원본성)가 적용된다.

---

55) Restatement 2d Contracts, 제152조-제154조 참조.

56) 출가적인 요건으로는 i) 통지: 오류 및 자신은 상대방이 수령할 전자기록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즉시”的 문제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ii) 합리적인 조치(상대방의 합리적인 지시 포함)를 취하여 오류 있는 전자기록으로 인하여 수령한 약인을 상대방에게 반송하거나, 상대방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고, iii) 果實은 반환하여야 한다.; UETA 제10조 Comment No. 6.

## 6. 공증과 인증

본 법 제11조는 서류의 공증개념을 전자거래에 도입한 규정이다.

Comment에서는 “본 조는 공증인이나 기타 권한 있는 자가 그의 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스탬프, 날인 요건을 유효하게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이러한 본 조가 공증 관련법의 다른 요건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전자적 방식으로도 서명이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sup>57)</sup>

## 7. 전자기록의 보존; 원본성

본 법 제12조는<sup>58)</sup> 전자기록이 기록 및 원본으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전자기록이 정확하게 재생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한, 결국 본 조도 종이로 된 기록의 기능적 등가성 원칙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sup>59)</sup> 본 조는 전자적으로

57)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공증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e-mail을 통해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인과 매수인은 반드시 동석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공증인에게 그의 신분을 밝히고 이에 대해 선서하여야 한다. 또한 공증인의 전자서명이 반드시 동 매매계약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는 진술서(affidavit)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주법에 따라 선서를 주재할 권한을 가진 법원서기가 매수인과 동석하고, 선서를 시킨 다음, 선서사실과 진술내용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전자기록에 담아 매도인에게 전송한다. 물론 이때 동 전자기록에는 매수인의 서명과 법원서기의 서명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58) “(a) 법에서 기록이 보존될 것을 요구한다면, 이 요건은 그 기록에 담겨질 정보를 전자기록으로 보존함으로써 충족된다. 다만, 그 전자기록은 (1) 전자기록으로서의 최종 서식에서 최초로 생성된 후 그 기록에 담겨질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추후 다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b) (a)항에 따른 기록보유 요건은 단지 전송, 통신 또는 수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기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누구든지 타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a)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a)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d) 법에서 기록이 원본으로 제출 또는 보존될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원본으로 제출 또는 보존되지 않은 경우 그 효과를 규정하는 경우, (a)항에 따라 보존된 전자기록에 의해서도 그 법은 만족된다. (e) 법에서 수표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은 (a)항에 따라 그 수표의 전면 및 이면에 있는 정보를 전자기록으로 보존함으로써 충족된다. (f) 본 (a)항에 따라 전자기록으로서 보존된 기록은 증거, 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는 법을 만족시킨다. 다만 본 법의 발효일 이후에 제정된 법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전자기록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본 조는 이 주(본법을 주법으로 수용한)의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동 기관의 관할 내에 있는 정보의 보존에 관한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Sourc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rticles 8 and 10.

저장된 정보는 監査, 증거,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 규정이다. 전자매체에서는 과연 무엇이 원본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본 조는 기록의 보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무결성에 관한 것이지 동 논의에서 말하는 “원본성”과는 다른 것이다.

Comment에 의하면 (a)항은 정확성 및 추후 접근가능성을 요구한다.<sup>60)</sup> 계속적 접근가능성 요건은 기술의 노화문제 나아가 정보를 새로 개발되는 시스템에 맞도록 갱신(update) 시켜야 할 필요성 문제를 다룬 것이다. 나아가 기술이 상호 호환되지 않은 시스템간 정보호환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정보를 저장한 매체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들의 경우, 지속적인 접근가능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본 조에 따른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저장이 유효하다. 본 조는 원본의 서면기록을 전자기록으로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서면으로 기록을 보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전자기록으로 유효하게 저장된 후에는 서면기록을 폐기할 수도 있다.

(c)항과 (d)항은 부수적인 정보로 인해 또는 제3자를 사용하더라도 전자기록으로서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d)항은 전자기록의 원본성 문제를 다루며, 전자기록의 원본으로서의 유효성은 “Uniform Rules of Evidence”과도 일치한다.<sup>61)</sup>

(e)항은 많은 州에서 두고 있는 수표보존 관련법에 관한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룬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개의 州法들에서 지급완료된 수표의 원본의 보존을 요구한다. 동 항은 그럼에도 이러한 경우에 전자화가 가져다 주는 이익과 효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

(f)항과 (g)항은 기타의 기록보존 관련법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에 의해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기록매체를 지정할 수 있고, 이 때 본 조는 각 州 정부에게 기록의 종류와 그 기록의 요건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59) Fed.R.Evid. 1001(3) and Unif.R.Evid. 1001(3) (1974)과 일치한다.

60) 정확성 요건은 “Uniform and Federal Rules of Evidence”에서 나온 것임.

61) Uniform Rules of Evidence 1001(3), 1002, 1003 and 1004 참조.

## 8. 송·수신 시기와 장소

본 법 제15조는<sup>62)</sup> 임의규정으로서 전자기록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를 정하고 있다. 본 조는 전자기록 송·수신의 효과를 다루지는 않으며, 수신인이 전자기록을 이해 또는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다른 해당 법에 따른다.

Comment에 의하면, (a)항은 전자기록의 송신요건 및 시기를 정한다.<sup>63)</sup> 송신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신자를 적절히 수신처로 하였거나 또는 기타 달리 수신자를 적절히 그 전자기록의 목적지로 하여야 한다. 수신자로 의도된 자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으나, 개개인이 아닌 특정 시스템 앞으로 송신된 경우에는 본 조 소정의 송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기록은 송신자의 통제

62) “(a)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자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송신된다: (1)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나 또는 수신자가 전송되어 온 그 형태의 전자기록이나 정보를 수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수신자가 그 전자기록을 재생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적절히 수신처로 하였거나 또는 기타 달리 그러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적절히 목적지로 한 경우; (2) 본항 제(1)호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식(form)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및 (3) 송신자 또는 송신자를 위하여 전자기록을 송신하는 자의 통제 밖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진입한 때 또는 수신자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수신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진입한 때. (b)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자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신된다: (1)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나 또는 수신자가 전송되어 온 그 형태의 전자기록이나 정보를 수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수신자가 그 전자기록을 재생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진입한 때; 및 (2) 본항 제(1)호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식(form)으로 되어 있는 경우. (c) 본조 (b)항은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장소가 본조 (d)항에 의해 수신장소로 간주되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d) 전자기록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자기록은 송신자 및 수신자의 영업장에서 각각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본 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 송신자 또는 수신자에게 2 이상의 영업장이 있는 경우, 그 영업장은 ‘기본거래’(underlying transaction)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장으로 한다. (2) 송신자 또는 수신자에게 영업장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주된 거주지를 영업장으로 한다. (e) 전자기록은 자연인이 전자기록을 인지하지 않더라도 본조 (b)항에 따라 수신된다. (f) 본조 (b)항 소정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의 전자적 수신인정의 수신은 기록의 수신을 성립시키지만 그 자체로 그 내용이 수신된 내용과 일치함을 성립시키지는 아니한다. (g) 본조 (a)항에 따른 송신이나 또는 (b)항에 따른 수신으로 의도된 전자기록이 실제로 송신 또는 수신되지 않았음을 당사자가 아는 경우, 그 송·수신의 법적 효력은 다른 해당 법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본 항은 합의로써 변경할 수 없다.”; Sourc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rticles 15.

63) 송신이 인정된 후의 법률효과는 다른 해당 법에 따른다.

를 벗어나거나 수신자의 통제하에 들게된 때에 발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e-mail 및 인터넷을 통해 송신되는 기록은 많은 서버시스템을 거치게 되는 바, 따라서 2 이상의 시스템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송신자의 통제의 상실이 송신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메시지전달시스템은 전자기록이 실제로는 송신자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경우, 송신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e-mail은 수신인이 통제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 수신인의 통제하에 놓인 후 메일박스에서 제거된(pulled back) 경우, 전자기록의 효과는 본 조에서 다루지 않는다. 통상 우편의 경우, 수령인의 우편함에서 우편을 제거하는 경우를 유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신인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송신자가 재생(retrieval)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b)항은 기록이 수신자가 지정 또는 사용하고 또 그 수신자가 접속하는 시스템에, 그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form으로, 진입한 때 수신된다고 하고 있다. 수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신의 핵심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수신인이 메시지를 서버에 그대로 남겨 그 메시지의 수신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거하고 있다.<sup>64)</sup>

(c)항과 (d)항은 임의규정으로서, 송·수신의 장소를 정하고 있다. 장소결정의 기준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의 실제 소재지가 아닌 수신자의 영업장을 사용하고 있다.<sup>65)</sup>

(d)항은 당사자의 영업장을 송·수신 장소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물론 당사는 전자기록을 송·수신하면서 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해당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장소 즉 거래와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장소로 한정될 것이다.

(e)항은 수신의 성립에 있어, 수신자가 시스템에 기록이 들어와 있음을 통지

64) 그러나, 송신자가 수신시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의 문제는 본 조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 수신자가 수신장소를 지배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b)항은 수신인이 그 시스템을 지정 또는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복수의 전자메일 주소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해결 조문이다.

65) 그 이유는 정보처리시스템이 당사자간의 거래와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처리시스템의 실제 소재지를 모르고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또 통신시스템의 위치는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변동될 수도 있고, 또 송·수신 장소가 문제되는 경우는 국제사법, 세법 등 다른 법 하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의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영업장이 적절한 장소라 할 것이다.

할 필요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f)항은 전자적 사실인정의 효과와 관련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규정이며, 수신사실만을 다를 뿐, 그 내용의 質이나, 전자기록의 개봉 또는 了知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g)항은 송·수신에 대한 법적 요건이 부과된 경우, 당사자가 (a)항과 (b)항에서 정한 송·수신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다만, 적용될 다른 법에서 합의에 의한 변경을 허용하는 한, 본 법의 규정은 그 한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다.

## 9. 정부부문의 전자기록

본 법 제17조 내지 제19조는<sup>66)</sup> 주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전자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는 선택조항(optional provisions)을 팔호로 처리함으로써 각 주가 이를 채택할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 정부기관이 전자적 매체를 사용함에 있게되는 장벽은 주간 거래 및 대민간인 거래에서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상거래(정보조달)의 당사자로서 행위하는 경우, 본 법의 일반적 효력규정이 적용된다. 즉, 정부는 상인 또는 정부의 고객과 전자적으로 거래를 수행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정부기관간의 기록 또는 통신과 관련하여 또는 정부기관에의 등록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동 조는 각 주가 이러한 전자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 조의 규정들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다. 많은 주에서 이미 정부에 의한 전자기록이나 전자적 통신의 사용을 배려한 입법을 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주에서 포괄적인 근거법(validating rules)이 필요하고, 따라서 본 법은 제17조 내지 제19조를 근간(baseline)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모든 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채택되는 시스템이나 규칙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시스템은 他주 정부기관의 시스템 및 민간부문의 일반적 시스템과 호환가능 하여야 할 것이다.<sup>67)</sup>

66) UETA 제17조는 정부간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8조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비정부기관과 거래함에 있어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폭넓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9조는 정부기관이나 주 관리가 표준을 정함에 있어 가능한 한 호환성(consistency in applications)과 상호이용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7) UETA 제17조 내지 제19조 Comment 참조.

## 10. 양도가능기록<sup>68)</sup>

본 법 제16조는 전자적 환경하에서도 기존의 양도가능증권(권리증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전자어음 등의 등가물인 전자문서의 작성, 양도가능성 및 강제가능성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본 조는 양도가능한 전자기록의 생성, 소지[즉 지배(control)]<sup>69)</sup>, 그로 인한 선의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 부여 등을 규정한다. 요컨대, 종이로 된 약속어음 등의 권리증권이 수반되는 거래에서, (대금지급을 포함 한) 거래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 종이로 된 권리증권의 작성, 보관,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본 조에서 “양도가능기록” 이란<sup>70)</sup> 다음의 전자기록을 말한다.

- (1) 만약 그 양도가능기록이 서면이라 할 때 [UCC 제3편]의 어음 또는 [UCC 제7편]의 권리증권; 그리고

68) 본 장의 작성은 UETA 제16조 Comment와 R. David Whitaker, Rules under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for an electronic equivalent to a negotiable promissory note, (Survey of the Law of Cyberspace), 1999, ABA 및 E-SIGN 제II편 제201조(양도가능기록)의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E-SIGN 제II편 제201조(양도가능기록)는 UETA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다.

69) 본 조 Comment No. 3 및 E-SIGN 제II편 제201조 (b)항에서 “지배”라 함은 “양도가능기록에 표창된 권리의 양도를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된 시스템이 양도가능기록의 수취인 또는 양수인으로 확실히 확정하는 자는 양도가능기록을 지배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UETA 제16조에서 지배는 종이로 된 권리증권의 점유(possession)에 해당한다. 즉, 약속어음이나 권리증권의 인도(delivery), 배서(indorsement) 및 점유(possession)를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지배”的 성립요건은 양도가능기록상의 권리의 양도를 증명함을 위하여 사용된 시스템이 양도가능기록이 발행 또는 양도된 자를 믿을 수 있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70) Comment에 의하면, 양도가능기록의 정의는 두 가지 면에서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i) 종이로 된 약속어음이나 권리증권의 전자적 등가물만이 양도가능기록으로 생성될 수 있음. 전자수표는 양도가능기록에서 제외되어 있음. 전자적 약속어음과 권리증권(e.g.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만을 양도가능기록으로 허용한 것은 수표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허용하더라도 지급메커니즘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수표의 경우, 전자수표의 허용은 수표지급시스템에 여파가 미치고 이는 본 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시스템적인 문제에 영향을 줌이 없이 계약에 의한 이러한 약속어음 등의 등가물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16조의 제한은 매우 중요하다. ii) 반드시 전자기록의 발행인이 전자기록이 양도가능기록임을 동의해야 함. 양도가능기록은 채무자에 의한 발행 시에만 생성될 수 있음. 종이로 된 어음을 전자화시키고 이를 의도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 조가 다루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다.

- (2) 전자기록의 발행인이 양도가능기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전자기록
- (b) 양도가능기록상의 권리의 양도를 증명함을 위하여 사용된 시스템이 양도 가능기록이 발행 또는 양도된 자를 믿을 수 있게 특정한다면 그 자가 양도가능기록을 지배한다.
- (c) 양도가능기록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생성, 저장 및 양도되었다면, 그 시스템은 (b)항을 만족시키고 또 사람은 양도가능기록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 하나의 정본이 존재하여 그 정본이 유일하고, 특정가능(identifiable)하고, 또 본 조 제(4)항, (5)항 및 (6)항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을 것;
- (2) 정본을 통해 [양도가능기록의] 지배를 주장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확인될 것
- (A) 양도가능기록을 발행한 자; 또는
- (B) 정본을 통해 양도가능기록이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능기록을 최후로 양도받은 자
- (3) 정본은 그의 지배를 주장하는 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전달되고 그들에 의해 유지될 것;
- (4) 정본의 확인된 양수인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사본 또는 개정본의 작성은 지배를 주장하는 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
- (5) 정본의 각 사본과 특정 사본의 사본은 정본이 아닌 사본의 사본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6) 정본의 개정본은 진정 또는 부진정함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d) 소지인의 지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가능기록을 지배하는 자는 그 양도가능기록의 [UCC 제1-201조 (20)항 소정의] 소지인이 되고, UCC상의 이에 상응하는 기록이나 문서의 소지인으로써 동일한 권리와 항변권을 가지며, 이러한 권리와 항변권에는 [UCC 제3-302조, 제7-501 및 제9-308조]에 따른 법상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각각 선의의 소지인, 유통가능한 권리증권의 소지인 또는 매입자(취득자)로서의 권리와 항변권이 포함된다. 이 항에서 권리의 취득 또는 행사를 위해 인도, 점유 및 배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 (e) 채무자의 권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가능기록의 채무자는 UCC하의 이에 상응하는 기록이나 문서의 채무자와 동일한 권리와 항변권을 갖는다.<sup>71)</sup>
- (f) 권리의 입증.<sup>72)</sup> 양도가능기록의 강제를 당할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

도가능기록을 강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가 양도가능기록을 지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증거는 양도가능기록상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양도가능기록을 지배하는 자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양도가능기록 및 관련 경영기록의 정본에의 접근을 포함한다.”<sup>73)</sup>

본 법 제16조의 채무자의 동의요건이 양도가능기록의 성질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단지 법정의 양도가능기록성립요건에 불과하다. 또 동 요건은 양도가능기록의 발행자에게 대금지급의무 이외에 다른 행위를 더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본 조는 독립성이 강한 규정(stand-alone provision)이다. 즉, 본 조에서 UCC 제3편, 제7편, 제9편의 특정 조항들만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동 편들의 제 규정들은 본 법에 편입되고, 본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용가능하다. 양도가능기록의 당사자의 권리(d)항과 (e)항에 따라 인정된다. 어떤 자에 의한 지배가 인정되면, 본 조에 의해 그 자는 양도가능기록의 소지인이 되고, 소지인은 종이로 된 유통증권의 소지인에 상응한다.<sup>74)</sup>

본 조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는 중간의 양수인과 양도인 책임(즉 어음배서인으로서의 책임 등) 및 기본계약에 기초한 양도가능기록의 취득의 법률효과이다. 이들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계약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계약에서 정함이 없다면 해당 법(예를 들어, 양도에 관한 계약법의 일반원칙 및 UCC 제3편)에 따라 해결된다.<sup>75)</sup>

71) 양도가능기록하의 채무자는 종이로 된 증권하의 채무자에 상당하다. 따라서, 양도가능기록하에서도 항변권의 포기가 없었고 또 양수인이 (d)항에 따라 선의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양도가능기록 하의 채무자는 계약양도 하에서 가지게되는 제 권리와 항변권을 가진다. 또, 동 채무자는 양도가능기록에 지급완료의 표시를 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72) 본 항은 양도가능기록하의 채무자에게 양도가능기록에 따른 지급을 받을 자가 진정한 채권자임을 보증하는 증거(양도가능기록 그 자체 또는 기타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양도가능기록(권리증권)의 지급인에게 지급에 따른 면책의 항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에서 중요하고, 특히, 계속하여 양도가능기록의 지배를 취득한 자가 과연 선의의 소지인으로 인정되는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73) Source: Revised Article 9. Section 9-105.

74) 중요한 점은 종이로 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양도가능기록의 지배를 취득한 자는 선의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을 제16조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UETA가 UCC 제3편의 약속어음의 전반적인 전자화를 유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75) 본 조 Comment No. 4. 참조.

본 법이 단지 전자적 매체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 조는 이에 대한 하나의 예외조항이다. 본 조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의 강제가능성과 관련하여 대주와 투자자에게 법적확실성을 제공하고, 금융서비스업계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게 될 것이다.

## V. 결 론

이상에서 UETA의 Comment를 중심으로 각각의 조문을 살펴보았다. UETA는 대체로 우리의 전자거래기본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특히 전송중 전자문서의 변조와 오류, 전자공증 및 양도가능기록 등에 있어서는 우리법에 비해 앞서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UETA의 특징 및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본 논문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UETA는 전자적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 간에만 적용된다. 즉, 전자거래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법이다. 또한 이를 위해 기존의 실체법을 존중하고자 최소규정방식(minimalist approach)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sup>76)</sup>

둘째, UETA는 기존 법 상의 서면·서명요건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에 있어, 법적인 장애요소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어, i) 사기방지법상의 서면요건,<sup>77)</sup> ii) 수표보존 관련법<sup>78)</sup>에서는 발행인에 의해 지급완료된 종이 수표를 보존토록 요구하고 있다. 은행 고객이 지급이 완료된 수표를 보존해야 한다면, 은행은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본 법은 전자기록에 등가성(equivalence)을 부여함으로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고자 한다. 다만, 본 법 자체는 계약법이 아니고 계약법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셋째, UETA는 “모든” 서면·서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와 관련된 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만 적용된다. 본 법에서 “거래”는 ‘영업행위, 상거래상

76) 예를 들면 i) “서명”的 의미와 효력, ii) 정보를 현시(display), 전송(transmit), 구성(format)하는 방법과 방식(제8조), iii) 기록이나 서명의 사람에의 귀속규칙(제9조), iv) 착오 관련 법(제10조) 등은 기존의 실체법을 적용한다.

77) 서면요건을 결하면 강제가능성(enforceability)이 부인된다. UCC § 2-201. 참조.

78) 모든 주에서 요구됨.

의 또는 정부의 업무와 관련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다.<sup>79)</sup>

넷째, UETA는 비대면거래에서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의 귀속과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ETA는 당사자간의 전자기록의 전송시나 자동화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변조(change)와 오류(error)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UETA는 서류의 공증개념을 전자거래에 도입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법에는 없는 UETA 제8조(양도가능기록)은 전자적 환경에서도 기존의 권리증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전자어음 등의 등가물인 전자문서의 작성, 양도가능성 및 강제가능성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본 조는 양도가능한 전자기록의 생성, 지배(control)로 인한 선의의 양수인으로서의地位부여 등을 규정한다

---

79) 그러나 적용배제 여부가 검토되었던 많은 표준거래(standard transaction)에 있어 법으로 서면·서명요건을 부과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에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등기 또는 등록여부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은 물론 권리증서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전자적 매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본 법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 參 考 文 獻

- 석광현, 국제적인 전자거래와 분쟁해결, 인터넷법률 창간호, 법무부, 2000. 7.
- 오병철,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1999년 3월 19일자 초안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제8집). 1999.
- \_\_\_\_\_,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
- 손태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최종안의 내용과 의의, 인터넷법률 제3호, 법무부, 2000. 11.
- 윤주희, 전자거래의 입법동향과 우리의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워크샵 2000-4), 2000. 10.
- 최준선, 인터넷과 상사법상의 과제, 법제연구 제18호, 한국법제연구원, 2000. 6.
- \_\_\_\_\_,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 분석,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연구자료), 2001. 5.
- 정경영,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0.
- Chissick, M., & Kelman, A., *Electronic Commerce : Law and Practice*, London, Sweet & Maxwell, 1999.
- Wright, B.,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2nd ed., Aspen Law & Business, 1996.
- Bainbridge, D. I., *Computer Law*, 4nd ed., Longman, 2000.
- Schmitthoff's,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0th ed., London, Sweet & Maxwell, 2000.
-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 1999. 6.
- U.S. Census Bureau, "Measuring Electronic Business: Definitions, Underlying Concepts, and Measurement Plans", 1998.
- The White House,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7. 7.
- Patricia Brumfield Fry, A Preliminary Analysis of Federal and State Electronic Commerce Laws.; <http://www.nccusl.org/whatsnew-article1.htm>.
- Whitaker, R. D., Rules under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for an electronic equivalent to a negotiable promissory note, (Survey of the Law of Cyberspace), ABA, 1999.
- Jane Kaufman Winn; Michael Rhoades Pullen, Despatches from the front: recent skirmishes along the frontiers of electronic contracting law.

- (Survey of Law of Cyberspace), ABA, 1999.
- Kronke, Herbert, "Applicable Law in Torts and Contracts in Cyberspace", in Boele-Woelki, Katharina/Kessedjian, Catherine (eds.), Internet Which Court Decides? Which Law Applies?, 1997.
-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1999)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2000)
- Guide to Enactment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 Uniform and Federal Rules of Evidence (1974)
- Paperwork Reduction Act 1995 (H.R. 830)
- Illinois Act Section (1996)
- 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 (1997)
- Uniform Commercial Code (UCC)
- Restatement 2d Contracts
- 전자거래기본법 1999.
- 전자서명법 1999.
- [http://www.law.upenn.edu/bll/ulc/ulc\\_frame.htm](http://www.law.upenn.edu/bll/ulc/ulc_frame.htm)
- <http://www.nccusl.org/>
- [http://www.nccusl.org/nccusl/uniformact\\_factsheets/uniformacts-fs-ueta.asp](http://www.nccusl.org/nccusl/uniformact_factsheets/uniformacts-fs-ueta.asp)
- [http://www.nccusl.org/nccusl/uniformact\\_why/uniformacts-why-ueta.asp](http://www.nccusl.org/nccusl/uniformact_why/uniformacts-why-ueta.asp)
- <http://www.uetaonline.com/>
- <http://www.ucitaonline.com/ucita.html>
- <http://thomas.loc.gov/cgi-bin/query/C?c106:/temp/~c106D3cdcn>
- <http://lawyers.about.com/careers/lawyers/library/weekly/aa061900a.htm?terms=e-sign>
- <http://www.ecommerce.gov/framewrk.htm>
- <http://www.ecommerce.gov/ede/report.html>

## ABSTRACT

### A study on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an, Byoung Wan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Drafted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The Act allows the use of 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signatures in any transaction, except transactions subject to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act is to remove perceived barriers to electronic commerce.

The Act's a procedural statute. It does not mandate either electronic signatures or records, but provides a means to effectuate transactions when they are used. The primary objective is to establish the legal equivalence of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with paper writings and manually-signed signatures.

With regard to the general scope of the Act, the Act's coverage is inherently limited by the definition of "transaction." The Act does not apply to all writings and signatures, but only to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relating to a transaction, defined as those interactions between people relating to business, commercial and governmental affairs.

The exclusion of specific Articles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reflects the recognition tha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rticles 5, 8 and revised Article 9, electronic transactions were addressed in the specific contexts of those revision processes. In the context of Articles 2 and 2A the UETA provides the vehicle for assuring that such transactions may be accomplished and effected via an electronic medium. At such time as Articles 2 and 2A are revised the extent of coverage in those Articles(Acts)

may make application of this Act as a gap-filling law desirable. Similar considerations apply to the recently promulgated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Another fundamental premise of the Act is that it be minimalist and procedural. The general efficacy of existing law, in an electronic context, so long as biases and barriers to the medium are removed, confirms this approach. The Act defers to existing substantive law. Specific areas of deference to other law in this Act include: i ) the meaning and effect of "sign" under existing law, ii) the method and manner of displaying, transmitting and formatting information in section 8, iii) rules of attribution in section 9, and iv) the law of mistake in section 10.

Key Word : UETA,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Transactions.